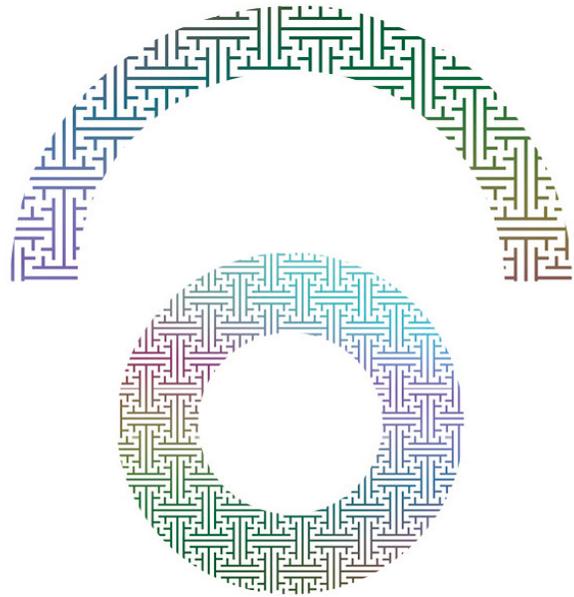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기본계획 연구



연구진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6
제2장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과 기존 설치 사례 연구	7
제1절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요	9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	10
제3절 기존 설치사례의 분석	12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를 위한 조사분석	23
제1절 조사설계	25
제2절 조사분석 결과	25
제4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기본계획(안)	31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의 분석체계	33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35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52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추진경위	64
제5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기본계획(안)	65
제5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 설립방안	83
제1절 기본방향	85
제2절 조례의 제정	85
제3절 설립 및 운영재원의 확보방안	89
제4절 인력확보방안	91
부록	93



표 차례

<표 4-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 분석기준	34
<표 4-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요 변화	39
<표 4-3> 연령대별 인구 대조표	43
<표 4-4> 세종특별자치시의 외부 위탁 검사 및 분석 의뢰 현황	45
<표 4-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 판단	51
<표 4-6>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근거 법령	55
<표 4-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인력 현황	61
<표 4-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판단	62
<표 4-9> 직속기관 사무위탁 수행가능성 검토	66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4-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 분석구조	34
<그림 4-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적 역할구조 · 37	
<그림 4-3>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의 주요 하천 현황 · 46	
<그림 4-4>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분류체계	53
<그림 4-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분석구조	54
<그림 4-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 분석결과	63
<그림 4-7> 직속기관 설치 유형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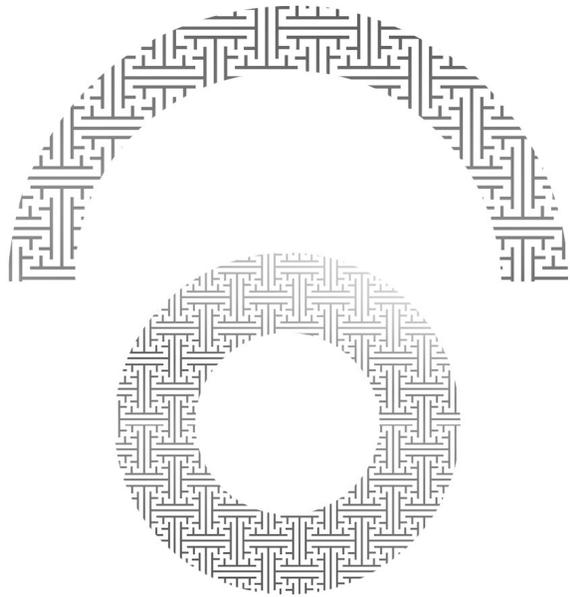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과업지시서 요청사항 】

-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환경에 관한 행정수요 급증
 -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과 토질·수질·대기 등 환경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험·조사·연구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환경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 필요
 - 세종시 보건환경타운의 조성 : 보건 + 환경 + 가축위생
- ※ 근거법령 : 보건환경연구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 제시

- 정부세종청사의 입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질병관리, 식품안전 등 보건 분야와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
- 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한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가축질병 예방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도시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각각의 시도에 설치하여야 하는 보건과 환경분야의 연구전문기관임(지방자치법 제113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지 선정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및 기관구성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적정 인력 산출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범위 설정
-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인 설치전략 수립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의 제정
 -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의 확보
 - 기타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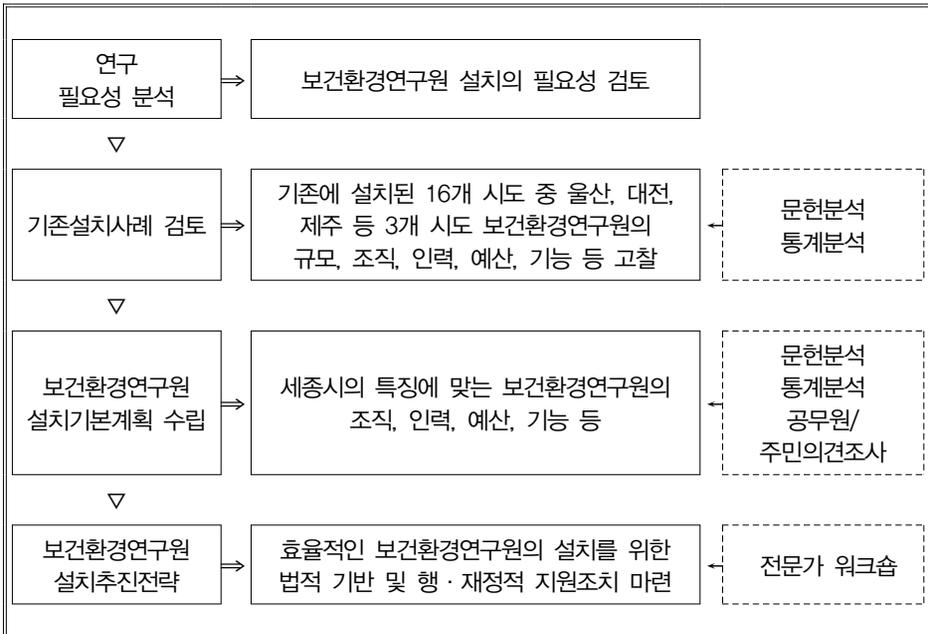
- 공간범위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함
- 대상범위
 - 보건환경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의 설치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권역별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 내용범위
 -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인력, 예산 기능 등의 설계에 연구의 중점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중앙(복지부, 환경부, 농축산식품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발간 보고서, 지침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 검사관련 통계자료
- 관계자면담
 - 공무원 관계자와 면담 및 협의: 세종시 보건위생, 환경, 가축위생 등 담당 기능 수행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조사
- 설문조사
 - 관련 공무원, 주민 대상 설문조사
- 공청회 개최
 - 해당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의 의견 반영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 및 적정 분석방법의 활용
 - 전체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각 연구 분야별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제2장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과 기존 설치 사례 연구

제1절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요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

제3절 기존 설치사례의 분석



제2장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과
기존 설치 사례 연구

제1절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요

- 설치 목적(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 단위(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함
- 기능(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마약류,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수처리제(水處理劑),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수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대기, 악취,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 폐기물·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인력(보건환경연구원법 제6조)
 - 연구원에는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
- 재원구조(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 제9조)
 - 수수료
 - 국고보조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

- 보건 및 복지, 환경위생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
 - 국제적 규모의 고위험군 병원체의 확산으로 위해요소가 점차 커지는 요즘, 보건환경 분야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분석능력의 제고가 필요함
- 보건 및 복지, 환경 분야의 연구·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감염병, 환경위생, 가축질병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축적하여 세종시의 특성을 파악하고 세종시민의 건강과 지역위생, 가축 질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함
- 정부 3.0의 생활화 시책 추진
 -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보건 분야와 환경분야의 중앙과 지방간 중복업무의 해소가 필요함
 - 유관기관(보건복지부, 환경부, 산하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관련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과 환경관련 검사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

여 보건위생과 환경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 및 환경 변화

- 정부세종청사의 입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질병관리, 식품안전 등 보건 분야와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
- 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한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가축질병 예방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도시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함

○ 시도 기구 정원 설치 규정의 준수

-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직속기관으로 각각의 시도에 설치하여야 하는 보건과 환경분야의 연구전문기관임(지방자치법 제113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되어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세종시특별법 규정의 준수(특별법 제3조)

- 국무총리실 및 주요 중앙부처가 입지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

제3절 기존 설치사례의 분석

○ 분석대상

-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된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중 대전, 울산, 제주 등 3개 시도

○ 분석내용

- 세종시와 비교 자치단체의 기본 현황

구분	본청 실국	직속 기관	사업소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인구 밀도	설치 년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립	비고
세 종	본청	6	2	1	175	489		
	구	-	-	-	-			
	계	6	2	1	175	489		
제 주	본청	13	9	15	313			
	구	-	-	-	-			
	계	13	9	15	313	303	1946	1991
대 전	본청	9	8	15	222			
	구	16	5	8	-			
	계	25	13	23	222	2,862	1989	1995
울 산	본청	9	6	12	219			
	구	16	5	0	-			
	계	25	11	12	219	1,057	1997	2000

※ 시 혹은 도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3년부터 최
장 45년이 소요됨

- 세종시와 비교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면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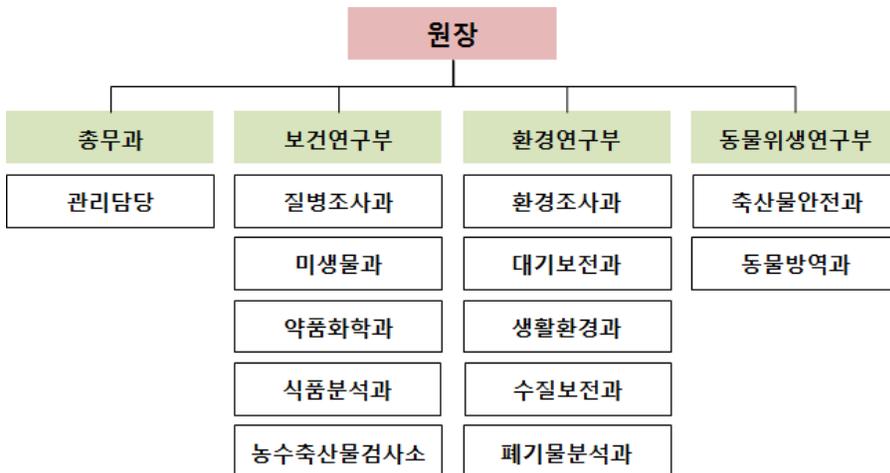
구분	인구(명)	면적(km ²)	조직기구	보건환경 연구원 인력	공무원 규모 (본청)
대전광역시	1,516,494	539.28	-	116	7,172 (1,196)
울산광역시	1,173,147	1,060.75	-	80	5,728 (1,088)
세종특별자치시	227,972	464.9	-	-	1,216 (648)
제주특별자치도	632,802	1849.02	-	44	5,172 (943)

※ 주) 통계치는 인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2016년 5월, 공무원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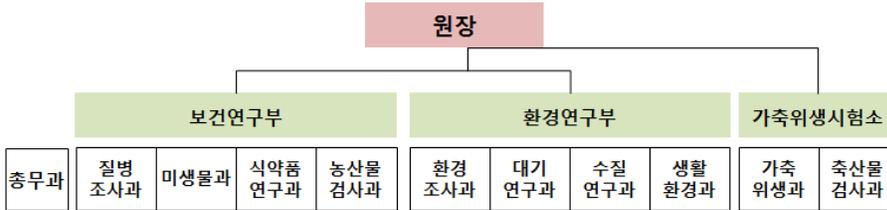
- 세종시의 면적은 대전시와 유사하고, 본청 공무원 수나 인구밀도는 제주도 와 유사함
- 2014년과 대비하여 대전시(1,547,467명), 울산시(1,192,262명) 등의 인구는 감소하고, 제주도(621,550명)는 1.8% 증가하였으나, 세종시(158,844명)는 43.5%가 증가함

- 비교 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규모

①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직도



②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③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대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은 12개 과를 두고 있고, 울산시는 11개과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는 7개 과를 두고 있음
- 대전시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 가축위생 등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보건과 환경 2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야별 수행 기능

구분	분 류	업 무 명	비고
보건 분야	미생물 검사	1.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사업 2. 식중독의 미생물학적 검사 및 추적관리 사업 3.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검사 4. 레지오넬라검사 및 미생물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 검사	1. 감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2. 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확인진단 3. 생물테러 관련 병원체감시	
	식품 분석	1.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등 검사 2. 건강기능식품 검사 3. 식품에 대한 조사 연구	
	의약품 분석	1. 민원의뢰 의약품 등의 검사 2. 관원의약품(화장품 포함) 등의 품질 검사 3. 수입의약품, 방역약품 및 위생용품 검사 4. 의약품 및 농산물에 관한 조사 연구	
	농수산물 검사	1. 농·수산물 중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2. 수산물 중 항생물질 검사 3. 농산물 잔류 중 방사능 검사 4. 농·수산물에 관한 조사 연구	
환경 분야	환경 조사	1.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오염도 검사 2.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3. 상수원수 수질검사 4. 하천·호수 등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대기 보건	1.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 2. 대기 중의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 및 자동측정망 운영 3. 대기오염 저감 및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먹는물 검사	1. 먹는 물, 먹는 샘물, 상수도급수, 민방위비상급수, 먹는 물 공동 시설,수영장수, 욕조수, 온천수, 지하수(생활,농업,공업용수)등 수질검사 2.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수질검사 3. 수질미생물 검사 4. 먹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 폐수 검사	1. 폐기물 검사 2. 폐수배출시설 및 침출수 방류수 수질검사 3. 오수, 하수, 분뇨 및 축산분뇨 방류수 검사 4. 수질보전 및 폐기물에 관한 조사 연구	

구분	분 류	업 무 명	비고
	생활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2. 악취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3. 소음·진동검사 및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검사 5. 토양오염 검사 및 실태조사 6.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가축 질병 감염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제역 감염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및 예방업무 2. 구제역 매몰지 소독, 복토상태, 침출수 여부 및 배수로 정비 확인과 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농장소독 요령 및 방역지침 교육과 농가소독지원 3. 가축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처 등과 관련된 검사 및 연구업무 	

-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별 검사 실적

구분	합계	보건분야	환경분야	비고
계	1,379,885	518,677	861,208	
서울시	413,908	120,825	293,083	
부산시	68,461	21,701	46,760	
대구시	39,982	27,998	11,984	
인천시	65,919	42,659	23,260	
광주시	38,368	20,468	17,900	
대전시	61,449	42,936	18,513	
울산시	72,184	13,694	58,490	
세종시	735	264	471	민간인 검사 건수 제외 (규격기준, 수질검사 등)
경기도	337,412	87,684	249,728	
강원도	59,812	26,779	33,033	
충청북도	31,278	17,648	13,630	
충청남도	40,348	18,691	21,657	
전라북도	32,513	20,744	11,769	
전라남도	39,132	21,291	17,841	
경상북도	35,817	13,822	21,995	
경상남도	42,567	21,473	21,094	
제주도	42,195	28,771	13,424	

- 현재, 세종시의 기능별 검사실적은 민간인 검사의뢰 건수를 고려한다고 해도, 대전시와 울산시의 1/6, 제주도의 1/4 정도에 불과함
- 다만, 인구규모가 50만명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대구,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제주도 등과 유사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검사 실적이 시도의 인구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감염병 발생 세부현황(2012-2015)
- 출처: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http://is.cdc.go.kr>)

① 대전광역시

구분	질병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군	장티푸스	1	3	12	15	31
	파라티푸스	2	3	0	1	6
	세균성이질	1	4	0	3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3	1	4
	A형간염	48	25	21	60	154
2군	백일해	0	1	1	3	5
	파상풍	0	0	1	0	1
	홍역	0	0	16	0	16
	유행성이하선염	625	1,720	436	274	3,055
	풍진	1	0	0	1	2
	일본뇌염	3	0	0	3	6
	수두	487	629	1,238	1,245	3,599
	급성B형간염	4	3	5	7	19
	폐렴구균	0	0	0	1	1
3군	말라리아	4	4	2	6	16
	성홍열	2	30	208	241	481
	수막구균성수막염	0	0	0	0	0
	레지오넬라증	0	1	1	1	3
	비브리오패혈증	1	2	0	3	6
	발진열	1	0	0	0	1
	쯔쯔가무시증	444	517	300	284	1,545
	렙토스피라증	0	0	1	0	1
	브루셀라증	0	0	3	0	3
	신증후군출혈열	6	7	5	4	22
	CJD/vCJD	2	1	2	1	6
	매독(1기)	17	10	13	18	58
	매독(2기)	5	8	9	7	29
	매독(선천성)	0	0	0	2	2
4군	뎅기열	8	17	5	9	39
	큐열	0	1	1	0	2
	유비저	0	1	0	1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0	0	2	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24	24
총계(명)		1,662	2,987	2,283	2,217	9,149

② 울산광역시

구분	질병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군	장티푸스	1	0	0	1	2
	파라티푸스	1	1	2	1	5
	세균성이질	1	1	0	1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3	7	14	0	24
	A형간염	2	6	19	13	40
2군	백일해	0	1	2	1	4
	파상풍	0	0	0	0	0
	홍역	0	0	3	0	3
	유행성이하선염	226	335	709	874	2,144
	풍진	1	1	0	0	2
	일본뇌염	0	0	0	0	0
	수두	1,206	1,376	1,189	1,349	5,120
	급성B형간염	1	1	5	9	16
	폐렴구균	0	0	4	14	18
3군	말라리아	3	1	4	4	12
	성홍열	13	100	145	383	641
	수막구균성수막염	0	0	0	0	0
	레지오넬라증	0	1	0	3	4
	비브리오패혈증	3	3	1	1	8
	발진열	0	0	0	3	3
	쯔쯔가무시증	431	658	480	412	1,981
	렙토스피라증	2	1	1	1	5
	브루셀라증	0	2	0	0	2
	신증후군출혈열	3	6	2	3	14
	CJD/vCJD	1	1	1	0	3
	매독(1기)	9	6	26	9	50
	매독(2기)	1	3	5	4	13
	매독(선천성)	0	1	2	3	6
	4군	땡기열	1	5	1	2
큐열		0	1	0	0	1
유비저		0	0	0	0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2	0	2	4

구분	질병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총계(명)	1,909	2,520	2,615	3,093	10,137

③ 제주특별자치도

구분	질병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군	장티푸스	0	0	0	1	1
	파라티푸스	0	1	0	0	1
	세균성이질	3	1	3	0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1	5	4	11
	A형간염	1	5	11	8	25
2군	백일해	3	0	3	5	11
	파상풍	1	0	0	0	1
	홍역	0	0	1	0	1
	유행성이하선염	610	687	318	197	1,812
	풍진	1	0	0	0	1
	일본뇌염	0	0	0	0	0
	수두	659	918	827	1,008	3,412
	급성B형간염	3	1	0	0	4
	폐렴구균	0	0	1	1	2
3군	말라리아	2	2	2	2	8
	성홍열	9	48	77	45	179
	수막구균성수막염	0	0	0	0	0
	레지오넬라증	0	0	0	1	1
	비브리오패혈증	0	0	2	0	2
	발진열	2	0	0	0	2
	쯔쯔가무시증	76	62	59	67	264
	렙토스피라증	0	0	0	0	0
	브루셀라증	1	4	1	0	6
	신증후군출혈열	1	2	2	0	5
	CJD/vCJD	0	0	0	1	1
	매독(1기)	19	15	22	23	79
	매독(2기)	5	3	3	3	14

구분	질병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매독(신천성)	0	0	0	0	0
4군	뎅기열	2	5	0	2	9
	큐열	0	0	0	0	0
	유비저	0	0	0	0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6	7	9	2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총계(명)		1,399	1,761	1,344	1,377	5,881

④ 세종특별자치시

구분	질병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군	장티푸스	0	0	0	0	0
	파라티푸스	0	0	0	0	0
	세균성이질	0	0	0	1	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0	1	1
	A형간염	0	1	1	5	7
2군	백일해	0	0	0	1	1
	파상풍	0	0	0	0	0
	홍역	0	0	0	0	0
	유행성이하선염	36	54	43	35	168
	풍진	0	0	0	0	0
	일본뇌염	0	0	0	0	0
	수두	15	78	36	83	212
	급성B형간염	1	1	0	0	2
3군	폐렴구균	0	0	0	1	1
	말라리아	0	0	0	1	1
	성홍열	2	5	6	8	21
	수막구균성수막염	1	0	0	0	1
	레지오넬라증	0	0	0	0	0
	비브리오패혈증	0	0	0	0	0
	발진열	0	0	0	0	0
3군	쯔쯔가무시증	88	69	49	42	248
	렙토스피라증	0	0	0	0	0

구분	질병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브루셀라증	0	0	0	0	0
	신증후군출혈열	3	2	6	2	13
	CJD/vCJD	0	0	0	0	0
	매독(1기)	0	0	1	1	2
	매독(2기)	0	0	1	0	1
	매독(선천성)	0	0	0	0	0
4군	렙티열	0	1	0	3	4
	큐열	0	0	0	0	0
	유비저	0	0	0	0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0	1	0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총계(명)		146	211	144	184	685

- 최근 4년간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은 대전시가 9,149건, 울산시가 10,137건, 제주도가 5,881건 등이고, 세종시는 685건으로 제주도의 1/1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울산시가 대전시 보다 법정 감염병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정 감염병 발생건수가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를 위한 조사분석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조사분석 결과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를 위한 조사분석

제1절 조사설계

- 조사분석방법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 전문가 워크숍 : 보건분야, 환경분야, 가축위생분야 전문가 대상
- 조사분석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지 선정
 - 기능 : 분야별(보건분야, 환경분야, 가축질병방역분야) 세종시 특수성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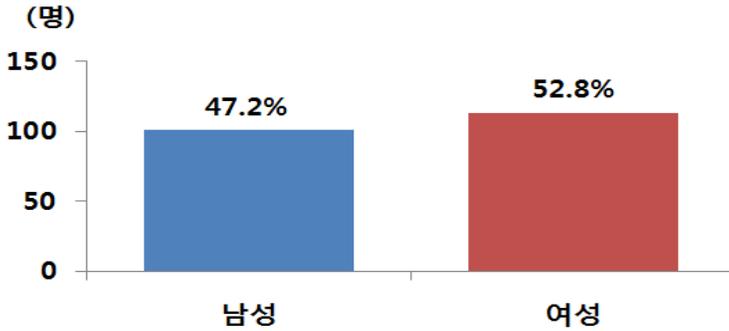
제2절 조사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세종시 공무원, 시민 등 100명 무작위 추출
- 조사기간 : 2016. 4. 18. - 2016.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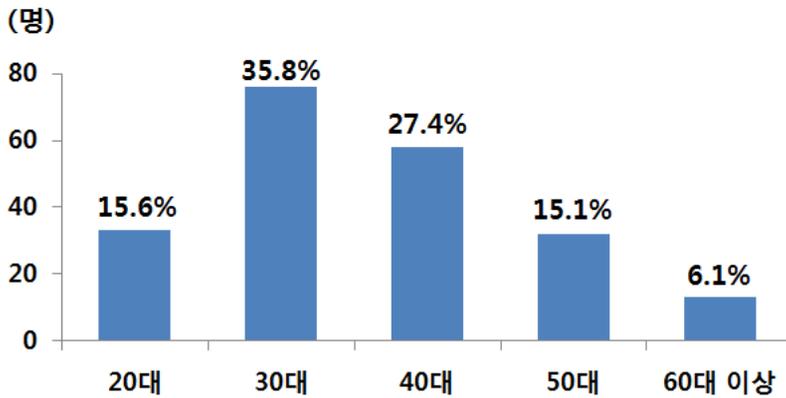
○ 조사대상 분석

－ 성별



성별	빈도수	비율(%)
남성	101	47.2
여성	113	52.8
계	2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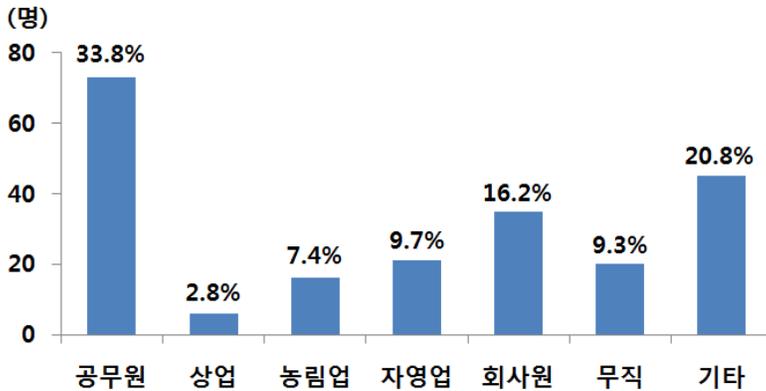
－ 나이



• 평균 : 40.5, 표준편차 :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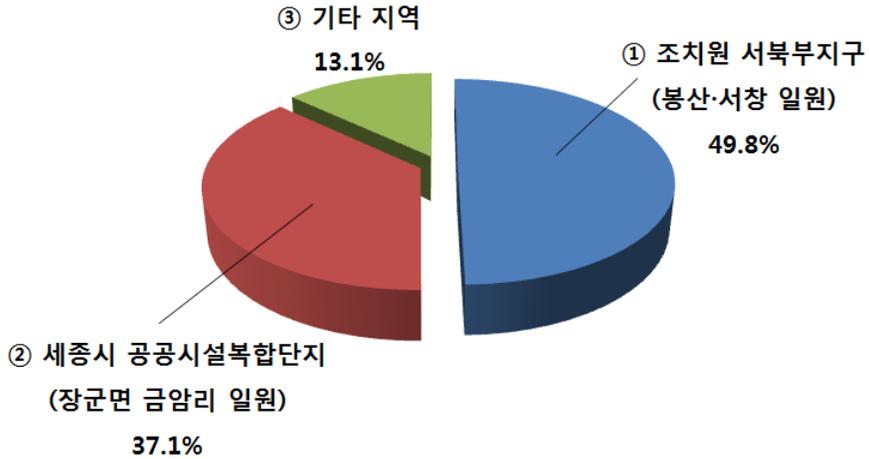
연령대	빈도	비율(%)
20대	33	15.6
30대	76	35.8
40대	58	27.4
50대	32	15.1
60대 이상	13	6.1
계	212	100

－ 직업



직업	빈도수	비율(%)
① 공무원	73	33.8
② 상업	6	2.8
③ 농림업	16	7.4
④ 자영업	21	9.7
⑤ 회사원	35	16.2
⑥ 무직	20	9.3
⑦ 기타	45	20.8
계	2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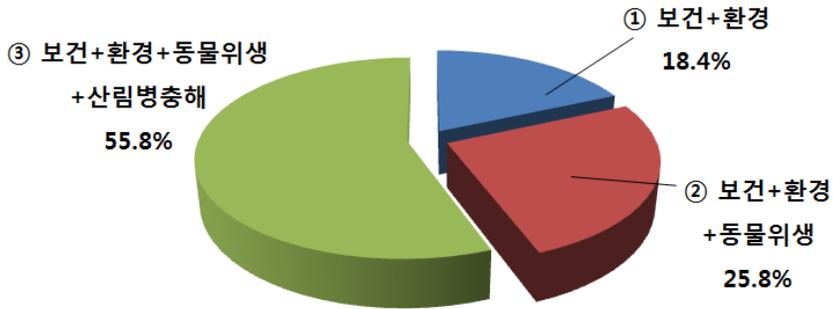
○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



위치	빈도수	비율(%)
① 조치원 서북부지구(봉산·서창 일원)	106	49.8
②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장군면 금암리 일원)	79	37.1
③ 기타 지역	28	13.1
계	213	100

-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조치원 서북부지구 (봉산·서창 일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선호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역의 위치나 지역명을 제시한 응답자는 없었음

○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기능



수행기능	빈도수	비율(%)
① 보건+환경	40	18.4
② 보건+환경+동물위생	56	25.8
③ 보건+환경+동물위생+산림병충해	121	55.8
④ 기타	0	0
계	217	100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보건+환경+동물위생+산림병충해 등 4대 기능을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림병충해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수행기능

특수 수행기능	빈도수
① 대기	1
② 먼지(분진)	3
③ 미세먼지	1
④ 전염병(감염병)	2
⑤ 환경	1
계	8

- 세종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특수한 기능으로는 분진, 전염병(감염병), 대기, 미세먼지, 환경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대기 문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기본계획(안)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의 분석체계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추진경위

제5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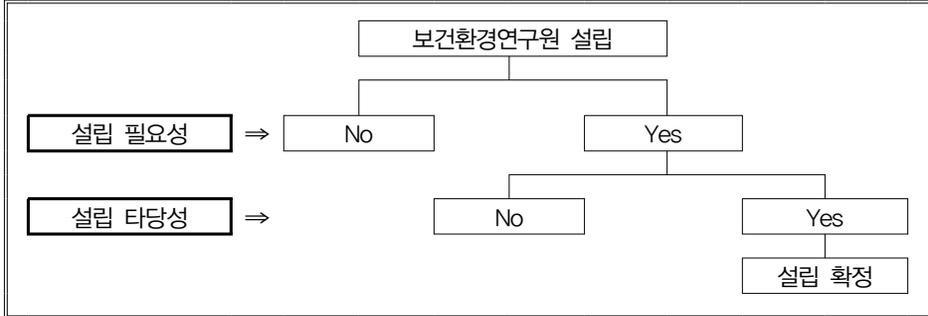
제4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기본계획(안)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의 분석체계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기 위한 설립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설립 필요성과 설립 타당성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과 환경 관련 검사와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독립 연구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의미함
 - 연구기관으로서 대응할 조사와 검사 및 연구수요가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은 전술한 설립 필요성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립이 타당한가를 의미함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필요성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으로서 현실적인 설립 타당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논거를 제시할 설립 필요성과 설립 타당성의 분석은 순차적 논리에 따라 분석함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설립 타당성을 판단함

<그림 4-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 분석구조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의 분석을 위한 판단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이 선정함
 - 설립 필요성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수행이 요구되는 수요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개발수요와 정보제공수요, 분권협력수요 및 학술허브수요 등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함
 - 설립 타당성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비조건이 충족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충족요건인 법제적 요소와 재무적 요소 및 인력적 요소 등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함

<표 4-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 분석기준

구분	내용
설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개발수요 ▸ 정보제공수요 ▸ 학술허브수요 ▸ 지역균형발전수요
설립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적 요소 ▸ 재무적 요소 ▸ 인력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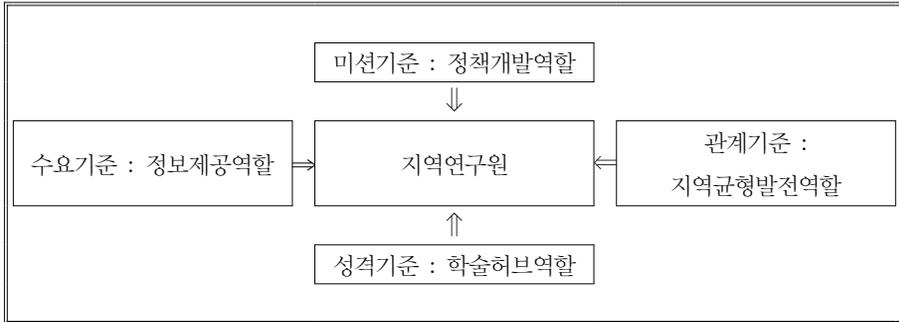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1. 일반적 역할구조

-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되는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제의 하나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도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변화는 외부의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고, 주도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며, 역할변화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도 광범위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되는 역할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을 것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션에 근거한 정책개발역할과 수요에 근거한 정보제공역할, 성격에 근거한 학술허브역할, 관계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역할 등임
- 첫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역할은 해당 시도의 보건과 환경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임
 -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중장기적 정책대안의 개발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 둘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또 다른 역할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건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다양하고도 풍부한 정보를 지역주민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적절한 정보가 요청됨
 -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고, 따라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보제공역할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로 지역사회의 보건과 환경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학술허브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각각의 시도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에서 지역사회의 보건과 환경 관련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과 환경 관련 학술활동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과 환경 관련 공동의 정책연구나 학술세미나의 개최 또는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통해서 지역단위의 학술활동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함
- 넷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과 환경 관련 분야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간 협력과 교류 등의 역할도 요청되고 있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시도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할 시도 주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보건과 환경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나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메르스 사태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적 역할구조



자료 : 금창호(2013) 참고

2. 판단기준별 분석

가. 정책개발수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정책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시도 주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설립이 요청됨
 - 해당 시도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관할 시도 주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대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여타의 시도와는 달리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으로 하는 특화된 정책개발 수요가 특별하게 요청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특별법 제2조)로 정부가 새롭게 건

설하는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개발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세 확장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함
 - 2015년 말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2012년 이후 인구 2.5배가 증가한 21만 이고, 2030년도에는 80만명으로 15년도 대비 약 400%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질병 관리, 식품안전, 대기, 수질 등 보건환경분야 민원행정수요 급증하고 있음
- 법정 감염병 증가 추세에 따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
 - 전 세계적 인구이동 확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빈도 증가에 따라 수요 예측이 어려운 각종 전염병 발생 확대 추세
 - ※ (2013년) 75종(콜레라 외 74종) → (2016년) 80종(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추가)
 - 병원균 채취 및 배양, 검사결과 도출, 대책수립 등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성 증대
 - 세종시는 전문기관의 부재로 선제적·전문적 감염병 예방에 한계
- 감사의뢰 기관 축소에 따라 감염병 대응 조치에 한계
 -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홍성 이전으로 감사의뢰 기관 축소(2개 → 1개)
 - 타 지역 연구원의 경우 업무 증가 등으로 협조에 어려움 표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우리 시의 신속한 초동 대처에 한계
- 인구급증에 따라 보건의료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시민들의 보건·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
-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는 달리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특수성을 살리고, 국가의 중추행정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과 환경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이 필요함
 - 현재 61개의 국가 중요 기간시설이 이전하였고, 추가로 국회 분원 등 설치가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이 퍼지는 경우, 대한민국 마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정책의 모색이 필요함

<표 4-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요 변화

변화요인	변화내용(예측)
인구	• 2030년도 80만명
중요 국가 기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20개(13,309명 이주) • 소속기관 20개(1,512명 이주) • 국립연구기관 15개(3,582명 이주) • 기타 공공기관 36개(450명 이주) 총 91개 기관 18,853명 이주
사회간접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92개 • 의료기관 169개
향후 변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분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효율성 확보 - 공무원 73% 서울 출장(그 중 47% 국회 출장) • KTX역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수도와 주요 도시와의 신속한 연계-국가 비상사태 대처 - 오송역까지 30-40분 소요(오송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소요) • 국립대학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 높은 도시로서 젊은 인재를 통하여 창조성과 활력 부여 • 도심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대도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해당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도심권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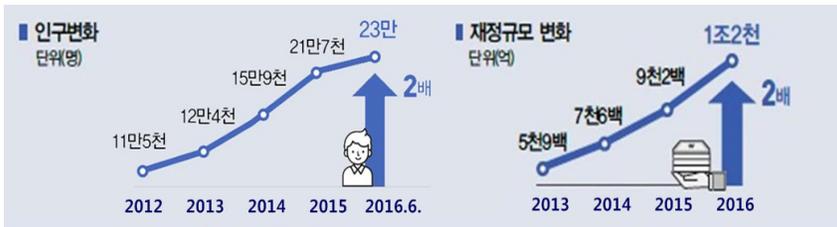
※ 국무총리실 및 주요 중앙 행정기관이 입지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가 컨트롤 타워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함

- 환경분야에 있어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계획(2016~2020), 환경부」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환경부는 '20년까지 주요 산단지역 등 전국 6개 지점에 대기중금속측정망 확충예정
 - 세종시는 인구수, 분석기관, 산단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함이 타당
 - 국립환경과학원 협의 없이 설치·운영된 중금속측정망 결과는 공식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 세종시 도시대기측정소에 중금속 측정장비(미세먼지 채취기) 설치가능하나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부재
 -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시기(2019년)에 맞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국최초의 단층제 행정구조의 정책을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정책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만들어가는 도시의 특성과 도농복합도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음
- 인구규모나 면적, 보건과 환경 관련 행정 수요 등과 같은 객관적인 통계수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시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행정복합도시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보건과 환경 관련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는 여타 시도의 보건과 환경 관련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이상으로 절실하고 중요성을 가지므로 세종특별자치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과 환경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수요는 다른 시도와 동일한 일반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수요와 세종특별자치시만의 특화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수요가 함께 존재하므로 이러한 세종시의 특수성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이 한층 커짐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충북, 충남, 대전 등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보건과 환경 관련 검사·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기관에의 위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일회적인 대응에 불과하므로 보건과 환경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축적이 불가능하므로 전담조사·분석 및 연구를 위한 기관에서 대응하는 것에 비하여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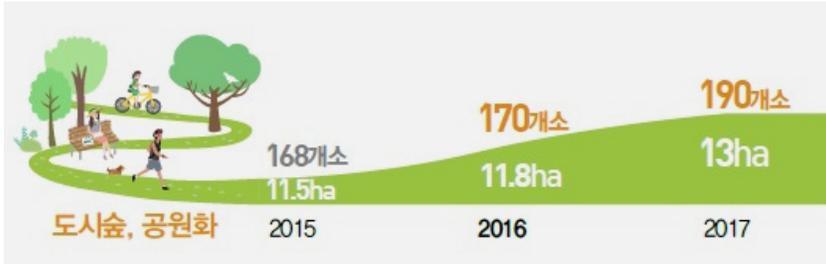
〈참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환경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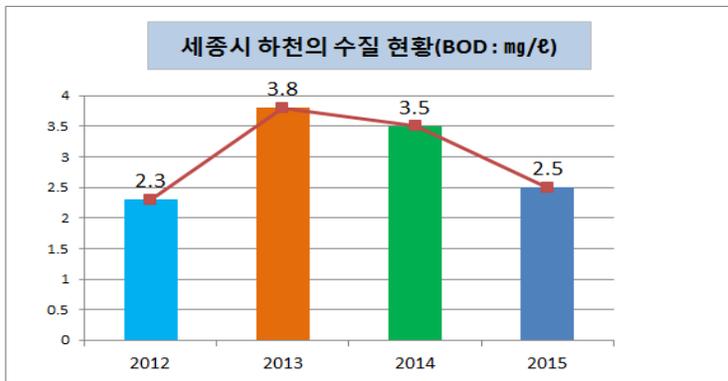
-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쾌적한 대기질 관리가 필요함



- 40개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인한 긴급한 환경문제 발생시 국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세종 신도시 전체면적 73.14km²의 52%인 38km²가 녹지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 세종시는 금강, 미호천 등 하천 총연장이 449.4km이고, 하천면적이 24.8km²로 전체면적 464.9km² 대비 5.3%로 생활환경속에 하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보건의로 관련 정책개발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연구수요가 존재함
 - 세종시는 비교대상이 되는 타 시도에 비하여 10세 이하의 영유아의 비율이 14.34%로 매우 높게 나타남. 따라서 질병들에 대한 저항력이 취약한 영유아와 관련된 보건위생 및 의료 관련 연구수요가 높다고 판단됨

- 비교대상이 되는 타 시도는 40대와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세종시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평균 연령이 36.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음). 따라서 활동력이 왕성한 30대 계층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왕래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표 4-3> 연령대별 인구 대조표

(2016. 05 기준)

지역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10세 미만	143,484	9.46	116,405	9.92	63,992	10.11	32,695	14.34
10세~20세 미만	180,714	11.92	136,360	11.62	76,688	12.12	25,357	11.12
20세~30세 미만	211,926	13.97	158,517	13.51	74,723	11.81	24,811	10.88
30세~40세 미만	225,304	14.86	179,074	15.26	86,580	13.68	43,282	18.99
40세~50세 미만	266,048	17.54	209,534	17.86	111,454	17.61	41,117	18.04
50세~60세 미만	239,094	15.77	203,726	17.37	98,591	15.58	27,571	12.09
60세~70세 미만	139,141	9.18	104,541	8.91	59,787	9.45	16,952	7.44
70세 이상	110,783	7.31	64,990	5.54	60,987	9.64	16,187	7.10
합계	1,516,494	100.00	1,173,147	100.00	632,802	100.00	227,972	100.00

나. 정보제공수요

-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역정보의 일차적 공급자는 각 지역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임
 -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 시정백서 또는 개별책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정보를 제외한 해당지역의 보건·환경분야의 정책 또는 실태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의 공급은 전반적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환경뉴스레터”, “보건환경백서”, “보건환경연구원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위한 환경관리 매뉴얼”등이나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전보건환경연구원보”, “금연관련 의약품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어르신 식사의 영양과 안전을 위한 건강식사 매뉴얼”, “ 등과 같은 간행물이 당해 시도지역의 보건·환경분야별 전문적 정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임
-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여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보건·환경분야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보수요가 존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보건·환경 관련 정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여타 시도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전문적인 보건·환경 관련 정보수요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시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측정, 조사 예방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전문기관이 필요함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보건환경연구원(충북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시료 시험과 분석을 의뢰하고 있음
 - 유류·화학물질 등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와 시민 건강에 민감한 미세먼지 경보발생시 신속한 오염원조사·분석 불가로 적시에 적절한 대응 한계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시료 분석의뢰 2013년 870건 → 2015년 1,263건으로 45% 증가(민간분야 의뢰분 제외)
 - 시험분석의뢰 건수가 증가 추세이나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충북이나 충남 각각의 자체적인 시험분석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분석·의뢰 업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의 분석이 곤란하여 적시에 대응시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음

<표 4-4> 세종특별자치시의 외부 위탁 검사 및 분석 의뢰 현황

구분	소계		감염병		식품		환경검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435	469,213	914	61,411	633	145,071	1,888	262,731
2015	1,263	142,313	485	26,065	308	50,517	470	65,731
2014	735	115,322	107	11,085	157	41,237	471	63,000
2013	870	126,759	199	17,713	94	33,046	577	76,000
2012	567	84,819	123	6,548	74	20,271	370	58,000

* 총 위탁검사 수 3,435건('12년 대비 122% 증가)

* 감염병 914건, 식품 633건, 환경검체 1,888건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행정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건·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의 축적과 세종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세종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함
 - 세종시는 국가하천인 금강과 미호천이 관통하는 하천연장이 449.42km로 타 지자체 보다 길며, 인근 대전시의 하천면적 비율 3.6% 보다 높은 24.8 km²로 5.3%를 차지하여 하천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은 도시로 유류·화학물질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지역개발과 분지형 지형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질 농도가 높고, 주민들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지역별 대기오염도 검사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수단이 전무함
- 유소년(0~14세) 인구가 인근 대전시의 14.7%에 비하여 우리시는 46,382명으로 20.4%에 달해 2배 가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 미세먼지와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신도시 내 대형공사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금강·미호천 주변에 제지공장이 많아, 미세먼지의 발생이 높은 지역이므로 환경오염과 대기질에 대한 조사·검사 및 자료관리가 필요함
- 도·농복합도시로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경부·호남 고속 및 일반 철도 경유, 군부대 위치로 과거부터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소음·진동과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및 집단행동이 빈번히 발생함
- 신도시 첫마을 아파트 및 정부청사 주변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신도시 지역내 아파트 세대수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어 세종시 자체 층간소음 측정 및 분쟁조정 필요함

【 검사업무 위탁 운영의 문제점 】

-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 대 유행시에 해당 자치단체의 검체부터 검사
 - 주말 및 연휴에는 위탁 검사 의뢰 곤란
 -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 배분하여 검사 의뢰
- 충남·북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증가에 따른 위·수탁 협약 기피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 연구사 파견 요구
-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흥성이전(2016년 6월) : 검체 의뢰 시간 과다 소요
 - 왕복 4시간 이상 소요

다. 학술허브수요

- 시도별 권역 내에는 보건·환경 관련 분야 학술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도별로 소재하는 국공립 및 사립의 대학들과 기업연구소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보건·환경 관련 학술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보건·환경 관련 연구기관들이 고유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의 문제해결에서는 상호간 연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
 - 시도별 상호간 보건·환경 관련 학술활동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세미나, 워크숍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여타 시도와 달리 보건·환경 관련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국립종합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종합병원이 입지하고 있지 않으며, 보건·환경 관련 연구소를 설치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도 입주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다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학 등의 전문 보건·환경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학술연구를 추진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필요함
 - 직접적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보건·환경 관련 학술허브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보건·환경 관련 학술허브 기능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지위가 있음으로 각종 학회, 대학 등과 연계된 학술행사 등의 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라. 지역균형발전수요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나 면적, 행정수요, 경제규모, 사회·문화 등 인프라 구축 등의 측면에서 다른 시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전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국가 목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다른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세종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세종시특별법 제3조)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세종시특별법 제4조)
 -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함(행복도시특별법 제3조)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행복도시특별법 제3조)
-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후 주요 행정수요는 다음과 같음
 - 세종시는 혁신도시와 함께 전국 균형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정책이 서울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방이나 전국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보건환경연구

원의 설립의 국가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 정부 부처와 국회의 공간적 관리는 세종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막대한 행정 비효율을 낳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 분원 설치의 세종시와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문제인데, 만약, 국회의 분원이 설치되면, 세종시의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져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게 됨
- 세종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또다른 걸림돌은 철도역이 없다는 것인데,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철도는 청사에서 거리로 17km, 시간으로 30~40분가량 떨어진 청주의 오송역을 이용해야 함. 철도역은 도시의 심장과 같은 곳이므로 세종역의 설치가 필요하고, 세종역이 설치되는 경우,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감염병의 전염, 환경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요청됨
- 국립대학 하나 없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의 활력이나 매력이 떨어지고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지위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물론 지금도 세종시 행정구역 안에는 고려대와 홍익대의 세종캠퍼스, 대전가톨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등이 있으나 이들 대학은 세종시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모두 사립대학임. 세종시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도시에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의 설치가 필요함. 대학이 가져다주는 도시의 매력, 생동감, 창조력, 인구 유입 효과 등을 생각하면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원의 신설 또는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국립대학교가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젊은 인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필요함
- 세종시 안에는 주된 상업, 업무, 문화, 공공 활동이 이뤄지는 ‘도시의 중심부’(도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 보다 뒤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음.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주요 기능들이 좀더 근접해야 하고 동심원처럼 순차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활동이 이뤄지는 ‘도시의 중심부’(도심)가 형성이 되면, 보건위생과 환경문제가 뒤

를 잊게 되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함

- 국제안전도시 위상 제고 및 보건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
 - 세종시는 감염병 안전지수*가 최하위 수준(5등급)으로, 감염병 전문가 부재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조사 결과(2015년 11월)

3. 설립 필요성 판단

- 전술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개발수요와 정보제공수요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매우 높게 제시하고 있으나, 학술허브수요와 지역균형발전수요는 설립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판단기준의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4-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 판단

구분	판단내역	판단종합
정책개발 수요	○	설립 필요
정보제공 수요	○	
학술허브 수요	△	
지역균형발전 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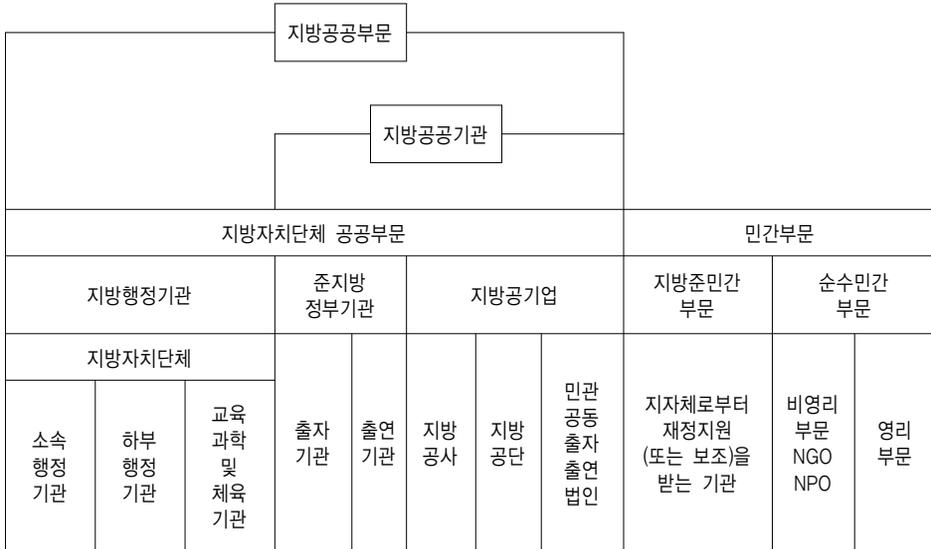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1. 분석구조

가. 공공부문 분류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의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기관(중앙부처 등)’; ‘지방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 등)’; ‘지방공기업(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행정자치부, 2012; 지방공기업평가원, 2013)
 -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행정기관(직·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 하부행정기관(행정구, 읍, 면, 동),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별도의 기관 등을 포괄함(「지방자치법」 제3, 4, 5절)
 - ‘지방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자본 참여 및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상응하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체가 ‘지방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이며, 이들을 묶어 지방공공기관이라고 함
-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민관 공동 출자·출연 법인, 개별 사업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등이 있음
 - ‘지방준정부기관’은 개별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의미하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민관공동출자·출연 법인을 칭함

<그림 4-4>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분류체계



나. 타당성 분석구조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분석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환경연구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함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과 환경 관련 정책개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의 합리적 운영,

세종시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의 이바지 등과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에서 구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은 이상과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제반조건들의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초점을 두되, 법제적 요소와 재무적 요소 및 인력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그림 4-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분석구조



2. 판단 기준별 분석

가. 법제적 요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은 「지방자치법」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근거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진료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기구와 정원의 확보가 가능함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음

<표 4-6>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근거 법령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원·지방환경연구원이나 지방수의연구원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	2조 :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나. 재무적 요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재무적 요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규모가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계획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초기 총사업비(예상)는 건축비 97억(건축비용 - 토지매입비·설계비·건축비 포함)과 장비구입비 40억 등 총 139억으로 나타남
- 추계총액 : 137억 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토 지 매입비	설계비	
	합 계	국 비 (40%)	시 비 (60%)				
합 계	137	55	82				
건축비	소계	97	39	58	58	34	5
	보건분야	55	22	33	31	19	5
	환경분야	28	11	17	13	15	-
	BL3	14	6	8	14	-	-
장비구입비	40	16	24				

○ 기 확보된 예산 : 설계비

- 기존 사유지를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확보 : 조치원읍 봉산·서창 일원 서북부지구
- 토지매입비 등의 절감 가능
- 질병관리본부에서 설계비 보조 : 2.1억 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토 지 매입비	설계비
	합 계	국 비 (40%)	시 비 (60%)			
합 계	97	39	58	58	34	5
보건분야	55	22	33	31	19	5
환경분야	28	11	17	13	15	-
BL3	14	6	8	14	-	-

○ 추후 소요예산 : 건축비(58억원)-토지매입비 제외

- 향후 관련부처(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로 부터 국고지원 가능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비 고
	합 계	국 비 (40%)	시 비 (60%)		
합 계	58	23.2	34.8	58	
보건분야	31	12.4	18.6	31	
환경분야	13	5.2	7.8	13	
BL3	14	5.6	8.4	14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법규는 다음과 같음

법령명 (재개정일)	법	시행령	비고
보건환경 연구원법 (현행)	제9조 (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1994.12.23. 시행령 개정 (환경부발족)
보건환경 연구원법 (91.03.08)	제8조 (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보건환경연구 원법으로 전부개정
보건 연구소법	제2조 (설치) ①보건연구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설치한다.	제4조 (국고보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보	1981.3.16. 시행령 개정

법령명 (재개정일)	법	시행령	비고
	②보건연구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국고보조) 국가는 보건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건연구소 및 그 지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내, 매년도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청장이 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보건 연구소법 (75.12.31)	제2조 (설치) ①보건연구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설치한다. ②보건연구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국고보조) 국가는 보건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국고보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보건연구소 및 그 지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내, 매년도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거쳐 이를 교부한다.	개정

법령명 (재개정일)	법	시행령	비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溯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제7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령명 (재개정일)	법	시행령	비고
	4.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전술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여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국가지원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법제정 이후 설립된 대전시와 울산시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였음
 - 그러나, 재무적 요소에서는 25명(원장 포함)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출범하는 것은 대전시나 울산시와 비교하여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무적 관점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이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다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임

- 대전시와 울산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음(정부가 지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지원요청을 하지 않음)
- 현행 법률이 존재하는 한, 세종시는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다. 인력적 요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인력적 요소는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임
 - 즉,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법적 요소나 재무적 요소에 더하여 필요인력의 확보도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시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위의 규정 제19조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원·지방환경연구원이나 지방수의연구원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시에 필요한 인력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의 틀 안에서 충원하여야 함
 -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519명인데, 현원은 1,467명으로 52명의 여유 정원을 가지고 있음
 - 5급 이하 정원은 1,125명이지만, 현원은 1,079명으로 46명의 여유 정원을 가지고 있음

<표 4-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인력 현황

직급별	기관별	총계		
		정원	현원	비고
총 계		1,519	1,467	+52
정무직계		2	2	
시장		1	1	
감사위원장		1	1	
일반직 계		1,174	1,126	+48
2급·3급		2	2	
3급		4	4	
3급·4급		1	1	
4급		37	37	
5급이하		1,125	1,079	+46
전문경력관		5	3	+2
연구직 계		8	9	-1
연구관				
연구사		8	9	
지도직 계		34	33	+1
지도관		4	4	
지도사		30	29	
소방직 계		292	292	0
소방준감		1	1	
소방정		3	3	
소방령 이하		288	288	
별정직 계		9	5	+4
1급상당		1	1	
4급상당		3		
5급상당 이하		5	4	

- 전술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에서 요청되는 필요인력의 확보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즉, 현원 보다 정원이 50여명 많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25명을 충분히 충원할만한 여유가 있으므로 인력적 요소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3. 설립 타당성 판단

- 전술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적 요소와 인력적 요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을 매우 높게 제시하고 있으나, 재무적 요소는 설립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판단기준의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재무적 요소의 압박요인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제2의 행정수도인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속가능한 광역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보건과 환경부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당위성은 재무적 요소보다 정책적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4-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판단

구분	판단내역	판단종합
법제적 요소	○	설립 타당
재무적 요소	△	
인력적 요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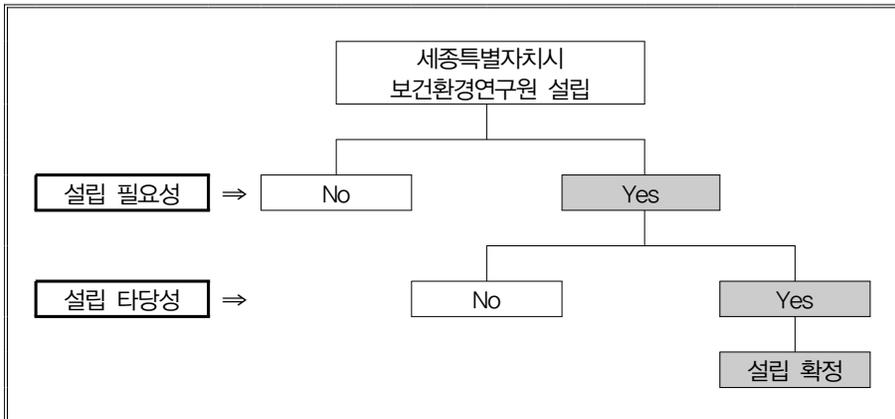
4. 설립 논거 분석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논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 설립 필요성과 설립 타당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설립 필요성 분석에서는 학술허브 수요와 지역균형발전 수요의 상대적 필

요성 저하와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는 재무적 요소의 충분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설립 타당성에서 나타난 재무적 요소의 압박을 고려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후, 시 규모의 확장에 맞추어서 연구원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예산의 반영이 가능한 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과 환경 관련 정책연구의 중요성만큼이나 연구원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그림 4-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논거 분석결과



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를 선진화로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 보건·환경분야 지도·점검, 환경오염사고 원인조사 긴급 대처로 신속한 사고 수습에 기여
- 보건·환경분야 측정망(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운영 및 연구사업으로 보건·환경관련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한 선진 보건·환경 정책 추진
- 시민의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추진경위

- 「보건환경연구원」설립 건의서 제출 (2015. 7. 7.)
- 「보건환경연구원(보건분야)」설립 설계비(210백만원) 내시 (2015. 12. 30.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업무 협의 (수시)
- 「보건환경연구원」설립 구상 (2016. 1. ~)
- 「보건환경연구원」설립에 관한 정책조정회의 개최(2회)
 - 사업 명칭, 재원 대책, 인력확보 대책 등 추진 방안 정립

제5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기본계획(안)

1. 기본 방향

-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기능과 환경기능 통합 설립
- 총 사업비는「보건환경연구원법」에서 지원 규정된 비율 및 내시된 사업비에 시비를 충당하여 설립 추진
 - 동법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업비를 보전 받아 시비와 대체 정산
- 조직 및 인력은 최소한으로 출범하고 시세 증가에 따라 충원
- 설립 위치는 서북부지구 등 용역을 근거로 하여 폭넓게 검토, 대상지 결정

2. 소속행정기관 설치 시 검토사항

가. 직속기관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광역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직속기관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지방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소방학교, 교육연수원이 있음
 -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 가능한 유형으로는 광역형(특별시/광역시)에 설치 가능 유형)에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교육연수원을,
 - 그리고 기초형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검토가 가능함

<그림 4-7> 직속기관 설치 유형

광역형 직속기관					기초형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놀이시설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교육연수원	소방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다만 이들 직속기관 중 일부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향후 설치될 세종특별자치시의 규모 및 행정수요, 비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사무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

<표 4-9> 직속기관 사무위탁 수행가능성 검토

기관		검토사항	
광역형	지방공무원 교육원	- 청사확보문제(입지부재)와 교육대상 공무원수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인근 광역자치단에 위탁 수행 - 장기적으로는 자체 교육시설확보 후 직접수행가능	위탁수행
	보건환경연구원	- 청사확보문제, 보건환경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위탁 수행	위탁수행
	교육연수원	- 청사확보문제, 대상교직원 수를 고려 위탁 수행	위탁수행
	소방학교	- 청사확보문제, 소방교육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위탁 수행	위탁수행
	소방서	- 소방서 설치	자체수행
기초형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운영(기초적 특성 반영)	자체수행
	보건소	- 보건소 운영(기초적 특성 반영)	자체수행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탁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구분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구	본청	4,852	1,406	1,732	1,641	233
	구	5,950	3,729	468	87	-
	계	10,802	5,135	2,200	1,728	233
인천	본청	6,204	1,500	2,986	1,286	213
	구	6,764	4,274	555	25	-
	계	12,968	5,774	3,541	1,311	213
광주	본청	3,002	1,072	1,094	777	222
	구	3,537	2,271	281	38	-
	계	6,539	3,343	1,375	815	222
대전	본청	3,198	1,089	1,214	829	222
	구	3,586	2,204	272	190	-
	계	6,784	3,293	1,486	1,019	222
울산	본청	2,294	941	713	587	219
	구	2,858	1,942	224		-
	계	5,152	2,883	937	587	219

구분		본청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실국	실과	담당		
대구	본청	12	54	215	10	19
	구	25	137	618	9	6
	계	37	191	833	19	25
인천	본청	12	62	262	13	16
	구	25	185	794	12	4
	계	37	247	1056	25	20
광주	본청	10	44	176	9	15
	구	18	101	422	5	3
	계	28	145	598	14	18
대전	본청	9	46	203	8	15
	구	16	90	353	5	8
	계	25	136	556	13	23
울산	본청	9	39	155	6	12
	구	16	92	332	5	0
	계	25	131	487	11	12

3. 설립계획(안)

가. 명 칭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나. 사업기간 : 2016 ~ 18 (3년간)

다. 기능 : 보건 + 환경 + 가축위생

○ 단기적 기능 : 보건 + 환경

- 설립 초기는 보건과 환경기능만 가지고 출발함

- 가축위생사업소는 별도로 운영

○ 중장기적 기능 : 보건 + 환경 + 가축위생

- 점진적으로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합하여 가축위생기능을 추가하여 수행

라. 설립 위치(장소)

- 세종시 신도심 및 구도심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위치 선정
 - 조치원읍 봉산·서창 일원 서북부지구(설문조사 결과 반영)
- 부지면적 : 4,200m²
 - 가축위생연구소 포함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확장 대비
 - 타 시도 최근 설치 내역 참고 (울산, 전북, 충남, 대전 등)
- 신축 가능 부지 비교

구분	위 치	장 점	단 점	비고
《제1안》	조치원 서북부 지구	·충분한 건축 부지 ·인구 밀집지역과 구분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피 시설 ·조치원 도시개발 사업계획과 연계	·부지 조성사업 공사기간과 겹침 *공사기간: 2016.5~2018.6 ·대중교통 불편	
《제2안》	조치원 청사 내	·조치원 중앙 위치 ·이용이 편리 ·공공보건의료기관 집적화 사업과 연계	·농정원 입주 ·건축 부지 협소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필요 ·조치원 SB프라자 건립으로 혼잡 ·인구 밀집지역 위치	
《제3안》	(가칭) 조치원 중앙공원 (침산공원+운동장)	·충분한 부지 ·조치원 침산2리 근린공원 사업 연계	·감정평가 완료 토지 보상 협의 중 ·시민들이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부지로 인식 ⇒ 용도전용 불가	

⇒ 《제1안》인 조치원서북부지역이 타 장소에 비해 가장 적지로 판단 설문조사결과에서도 1안이 최적지라고 선택함

마. 규모

○ 건축규모 : 3,300㎡ (BL3 별도 : 300㎡)

- 가축위생연구소 편입 및 실험실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면적 확충 불가피
-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젊은 인구(36.3세)를 가진 세종시의 특성상 생활환경부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 향후 인구가 50만으로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기본 설계 면적(2,172㎡)의 50%(1,128㎡)를 추가하여 총 3,300㎡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충남도의 경우 : 당초에는 4,960㎡로 출발하였으나, 8,996㎡로 확장함

○ 시설별 구분

- 공용 및 부속시설: 원장실, 총무과, 회의실, 민원실, 식당, 숙직실, 문서고, 창고, 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가스실 등
 - 연구시설: 부서별* 사무실 + 실험실
- * 보건, 환경, 가축위생

구분		면적(㎡)	근거기준	비고
합계		3,300		
기본 면적	소계	2,172		
	사무실(행정동)	114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실험실(연구동)	1,320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면적 x 80%	
	부속공간	203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설비면적	277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공용면적	258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추가면적		1,128	50만 인구 증가 대비 생활환경분야 추가	

※ 최근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규모

구분	설립 년도	면적(m ²)		사업비(억원, 천원)			인구수(천명, 명)			1인당 면적(m ²)	
		부지	건축	부지비	공사비	공사비 /면적	인구수	정원	인구수 /정원	부지	건축
충남 (홍성)	'15	13,225	8,998	75	188	2,089	2,055	66	31,136	200	136
전남 (무안)	'11	13,268	6,483	42	126	1,943	1,901	69	27,550	192	93
전북 (임실)	'10	14,084	4,713	5	76	1,612	1,854	68	27,264	207	69
충북 (오송)	'10	9,953	5,637	15	105	1,862	1,532	59	26,983	168	95
평균	-	12,632	6,457	34	122	1,876	-	65	27,979	191	98
세종	'18	4,200	3,300	34	44	2,040	230	25	9,200	168	86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2016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2010년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2010년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2007년

바. 예산

○ 건축비 추계액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토 지 매입비	설계비
	합 계	국 비 (40%)	시 비 (60%)			
합 계	97	39	58	58	34	5
보건분야	55	22	33	31	19	5
환경분야	28	11	17	13	15	-
BL3	14	6	8	14	-	-

※ 산출기초 (국비 40%, 시비 60% 계산)

- 부지비 : $168\text{m}^2 \times 25\text{명} \times 800\text{천원} = 3,360,000\text{천원}$ (약34억)
- 건축비 : (보건 : 행정동 + 보건실험실 = $1,512\text{m}^2 \times 2,040\text{천원} = 3,084,480\text{천원}$) + (환경: 환경실험실 = $660\text{m}^2 \times 2,040\text{천원} = 1,346,400\text{천원}$) + (BL3 : $300\text{m}^2 \times 4,600,000\text{원} = 1,380,000\text{천원}$)= 약 58억

○ 장비구입비 추계액 : 40억(주요실험장비 구입액 37억 + 예비비 3억)

○ 총 사업비(예상) : 137억

- 건축비용 : 97억 (건축·설계비·토지 매입비 포함)
: m^2 당 평균 단가 : 충남·충북 적용 (가장최근단가)
- 장비구입비 : 40억(주요실험장비 구입액 37억 + 예비비 3억)

※ 건축비 산정기준(평균 단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물 명	면적(m ²)	단 가 (m ²)	공 사 비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충남 홍성)	8,997	2.04	18,355
조달청	자원연구소 신축 (경북 영주)	3,993	2.61	10,404
	시험시설 증축공사 (대전 유성)	6,294	2.68	16,857
	수장고 및 연구동 증축공사 (대전 서구)	2,918	2.02	5,886
	생물안전시험연구동 증축공사 (인천 서구)	1,303	3.41	4,443
	종합연구동 신축공사 (경기 수원)	4,525	2.10	9,495
평 균			2.48	

※ 공공건축물 연구소분야 공사비 단가(조달청, 2010년) : m²당 2.07백만원 /
 평당 6.84백만원

⇒ 건물의 유형별, 재료비 차이로 현재는 평균 단가를 산출하지 않음(조달청)

※ 추후 기본용역 연구결과 반영하여 조정 / 토지매입비 제외

○ 연도별 국비 확보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금 액	39	2	20	17

[국비 예산 확보 계획]

- 보건복지부[국비4:시비6] : 설계비+건축비(보건분야에 한함) : 약 15~20억
 -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 장비 부분 확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약 5억(BL3시설비에 한함)
- ⇒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 예산 : 자치단체 부담
-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됨(대전시와 울산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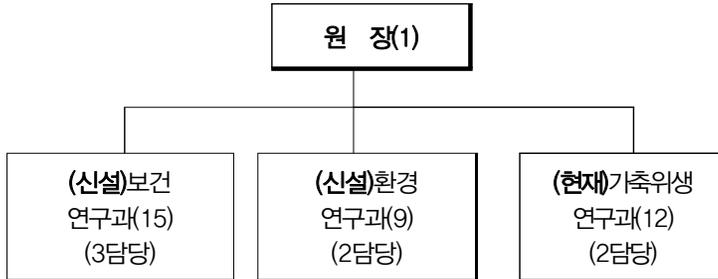
《 참고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산정 - 총30억)

- 인건비(25명) : 71,996,000원* × 25명 = 1,799,900천원
 - * 2016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1인 평균)
- 일반운영비 등 예산 : 10억원 (보건환경+가족위생 / 37명)
 -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 3,134,814천원 (보건환경연구분야 / 36명)
 -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 3,329,057천원 (보건환경연구분야 / 63명)

사. 조직 및 정원 구성

- 제1안(통합) : 보건 + 환경 + 가축위생 을 통합하여 설치
 - 3과(課) 7담당(擔當) ⇒ 37명



- 과별 담당 구성 (안)

구 분	담 당	비 고
보건연구과	총무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품분석담당	
환경연구과	대기보건담당, 수질분석담당	
가축위생연구과	위생검사담당, 전염병예방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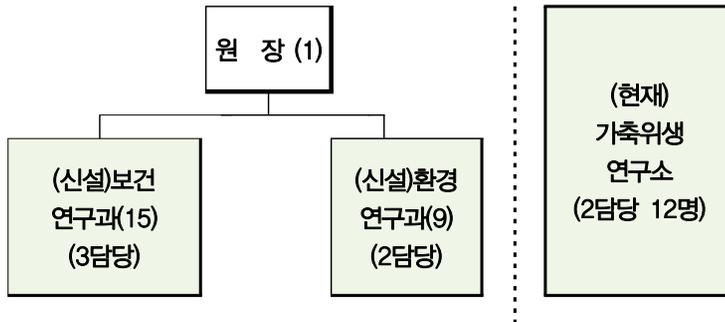
- 분야별 직급 구분(안)

구분	계	원장 (4급)	총무분야		연구분야			비 고
			6급	7급 이하	연구관 또는 5급	연구사	일반직 (7급 이하)	
인력	37	1	1	5	3	21	6	※가축위생연구소 인력(12명) 포함

- 최소화된 단순 조직으로 과별로 유형별, 기능별로 업무를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음
 - 1개 담당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4명임(전문가 워크숍 결과)
- 정원은 제주도의 70%범위 내에서 운영 : 보건·환경 분야 25명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직급 : 제주도(4급), 기타 지역(3급)
- 타 시도 통합 현황 : 통합 7개(특별시·광역시)

○ 제2안(분리) : 가축위생사업소를 분리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2(課) 5(擔當) ⇒ 25명
- 가축위생연구소 ⇒ 12명 (현재 인원)



- 신축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되, 조직은 별도 분리 운영

- 과별 담당 구성 (안)

구 분	담 당	비 고
보건연구과	총무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품분석담당	가축위생 연구소 제외
환경연구과	대기보건담당, 수질분석담당	

- 분야별 직급 구분(안)

구분	계	원장 (4급)	총무분야		연구분야		비 고
			6급	7급 이하	연구관 또는 5급	연구사	
인력	25	1	1	5	2	16	※가축위생연구소 인력(12명) 제외

-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연구소를 각각의 독립된 법령에 의거 분리함으로써 고유
의 업무에 대한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건환경분야, 가축위생분야)로
운영 가능

* 보건환경연구원법, 동물위생시험소법

-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음에도 가축위생연구소의 분리에 따른 조직
운영의 비 효율성과 가축위생연구소 직원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하여 조직의
약화로 인한 근무 의욕 상실 및 전국대비 위상약화

* 가축위생연구소 사업소장 : 세종시 (5급) / 전국 (4급)

- 타 시도 통합 현황 : 분리 9개(도 및 특별자치도)

○ 대안의 검토

구분	장 점	단 점
<p>통합 운영 (보건환경 + 가축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검사기관 유사분야 통합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유발 - 검사·분석에 특화된 독립기구로 질병 공동대응·연구 등 순기능 기대 - 연구소에서 既 확보된 장비·기술력 활용 용이(식품·농축산물 검사 등) - ‘도·농복합시’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보건·가축질병 종합서비스 가능 - 분야별 대 유행시, 인력 지원을 통한 조기 대응 검사 체계유지 - 폐수·가스·배기 등의 공조시스템 설치 공동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동물 연구기관의 통합운영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 필요 ■ 통합운영에 따라, 가축위생 연구소와 생산 농가 간 유대 관계 약화 우려 ※ 『동물위생시험소법』 시행(‘16.6)에 따른 가축위생연구소 명칭변경 불가피 - 관련법에 따른 전국 통일된 기관 명칭 사용(동물위생시험소) 및 조례제정 필요
<p>분리 운영 (보건환경 — 가축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령에 의한 검사기관의 설립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법 : 1991.3.8. - 동물위생시험소법 시행 : 2016.6.23. ※ 분야별 전문가(보건환경, 수의)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운영 ■ 감염병, 구제역·AI 재난질병 등 발생시 분야별 기능 및 역할 자주적 수행 - 사람 / 동물 감염병으로 나누어 시험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등 유사분야 분리에 따른 집적성, 시설 활용성, 예산 효율성 저하 * 고위험병원체 등 통제시설 신축 필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위해폐기물 처리시설 등) ■ 가축위생연구소의 ‘전국 유일’ 5급 기관으로 위상 약화 -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매년 축산물 업소 등 관리업체 증가 * 축산물업소수 2012) 188 → 2015) 283 전국 특·광역시중 1위의 축산규모(3천호 4,761천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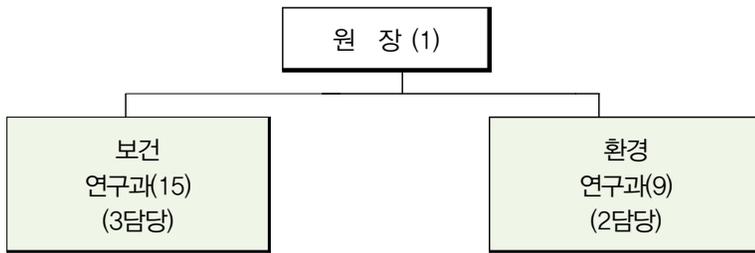
○ 판단

- 통합 또는 분리운영에 대한 검토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타 시도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므로, 통합 운영을 통한 보완·공유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판단됨
- 재정이나 인력 확보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출범 시점에는 2안(보건환경과

가축위생을 분리하는 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종시의 경우, 이미 가축위생연구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연구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1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 조직운영에 대한 최종 확정안 : 2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초기 조직구성은 앞선 2안과 같이,
 - 2과 5담당(25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계	원장 (4급)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		비고
		총무	감염병	식품분석	대기보건	수질분석	
25명	1	4	4	5	6	5	

- 중장기적으로 세종시가 인구 50만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함
 - 연구면적 규모의 확대가 초기면적의 1.5배 규모가 되어야 하므로 인력도 1.5배 인 27명 수준이 적당함
 -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젊은 36.3세의 평균 인구를 가진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환경부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기구 및 정원 현황

구분	일반현황		정원 (명)	부(과)명		기구 내역	비고
	인구 (천명)	면적 (km ²)		명칭	인원		
경기	12,245	10,184	205	총무과	20	총무팀(8), 경리팀(8), 서무팀(북부지원 4)	
				보건연구부	40	미생물팀(7), 바이러스팀(5), 감염병조사팀(5) 약품화학팀(7), 식품분석팀(5), 첨가물분석팀(6) 보건연구기획팀(5)	
				대기연구부	40	대기조사팀(13), 대기화학팀(7), 생활환경팀(7) 토양분석팀(8), 환경연구기획팀(5)	
				수질연구부	35	유역환경조사팀(9), 수질보전팀(8), 수질화학팀(5) 먹는물검사팀(7), 환경생태팀(6)	
				북부지원	34	미생물검사팀(7), 식품분석팀(6), 대기화학팀(5) 수질환경팀(5), 토양분석팀(4), 먹는물검사팀(7)	
				농수산물 검사소	36	수원농수산물검사소(11), 구리농수산물검사소(7) 안양농수산물검사소(9), 안산농수산물검사소(9)	
강원	1,540	16,873	78	총무과	12	관리담당(12)	
				보건연구부	23	미생물과(6), 질병조사과(4), 감염역학과(3) 식품분석과(6), 약품화학과(4)	
				환경연구부	31	수계조사과(5), 먹는물분석과(4), 대기공학과(4) 대기평가과(4), 생태환경과(3), 토양화학과(4) 산업폐수과(4), 환경안전과(3)	
				동부지원	12	과가 없음	
				총무과	11	총무팀(5), 경리팀(6)	
충북	1,572	7,433	59	보건환경 연구부	48	미생물검사과(9), 식품분석과(6), 의약품분석과(4) 환경조사과(7), 대기보전과(6), 먹는물검사과(6) 산업폐수과(5), 폐기물분석과(5)	
				총무과	9	총무팀(4), 경리팀(5)	
충남	2,048	8,204	66	보건환경 연구부	57	미생물검사과(9), 식품분석과(7), 의약품분석과(3) 농산물검사준비팀(2), 환경조사과(8), 대기보전과(7) 먹는물검사과(8), 산업폐수과(7), 생활환경과(6)	
				총무과	13	팀제가 없음	
전북	1,872	8,052	63	보건연구부	17	미생물과(7), 식약품분석과(10)	
				환경연구부	33	수계조사과(8), 대기환경과(6), 먹는물검사과(6) 산업폐기물과(7), 생활환경과(6)	
전남	1,906	12,247	62	관리과	13	관리담당(5), 경리담당(8)	
				연구지원 담당관	49	미생물과(8), 식품분석과(7), 약품화학과(5) 환경조사과(8), 대기보전과(7), 수질분석과(7) 폐기물분석과(7)	
경북	2,698	19,026	87	총무과	14	총무담당(8), 경리담당(6)	
				연구부	57	미생물과(6), 질병조사과(4), 약품화학과(5) 식품분석과(7), 환경조사과(5), 대기보전과(5) 생활환경과(4), 수질조사과(6), 응용수과(7) 폐기물분석과(6), 연구기획팀(2)	
				북부지원	16	환경분석과(10), 응용수과(6)	
경남	3,334	10,524	77	총무과	14	총무담당(7), 경리담당(7)	
				보건연구과	25	미생물역학팀(12), 위생화학팀(6), 식품농산물팀(7)	
				환경연구과	38	수계응용수질팀(15), 대기생활환경팀(12) 폐수토양팀(11)	
제주	594	1,848	43	행정지원팀	6	직원만 있음	정규직 36명
				7과	37	질병조사과(6), 식품분석과(5), 농수산물검사과(5) 환경조사과(5), 토양화학과(5), 대기환경과(7), 수질연구과(4)	

※ 참고 : 공공보건의료기관 집적화 경향

○ 배경

- 보건-의료-복지-문화정책 연계·통합 서비스 제공, 시민 건강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접근성 최적화를 위해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 지역에 설치
- 진료와 검사(연구)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추진
 - 진료 : 보건소, 세종시립의원, 100세 건강지원센터(치매, 정신 등)
 - 검사(연구) :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집적화와 보건환경연구원 연계 설립 SWOT분석

S (강점)	W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와 연구의 시너지 효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공동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운영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환경연구원은 고 위험병원체 등 검사기관으로 인식 ■ 이용이 편리한 충분한 규모의 부지 확보 필요 ■ 각기 다른 기능의 업무로 관리의 어려움 * 메르스, AI, 신종인플루엔자, 탄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개발 ■ 진료 중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시설(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타운 조성 시 진료 등 시민 이용률 감소(시민의식) ■ 추가 공공보건시설 설치 및 사업 확대 위한 충분한 대지확보 필요
O (기회)	T (위협)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집적화 사업과 연계 시 유의 사항]

- ▶ 공공보건의료기관 : 시내 중심지역이나 대규모 아파트 주변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선정 (예 : 조치원청사)
-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가축의 검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위험병원체(메르스, 탄저균,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신종감염병 등)의 진단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취급
 - ※ 현 보건소(조치원읍 소재) 신축 시에도 감염병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요구한 사례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의 적용

-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종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면적(10,000㎡이상)의 부지와 건축 규모(3,300㎡)를 확보
- 조직 및 인력은 세종시 인구 증가 및 성장 규모에 맞추어 타 지역에 비해 여건이 근접한 제주도(인구 62만여명)를 참고로 하여
 - 조직 : 보건과 환경 중심의 2과 5담당으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인력 : 25명(제주도의 70%정도)에서부터 단계적 확대
- 공공보건의료집적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집적화 범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 진료와 검사(실험)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특색에 맞추어 설립함이 효율적임

아. 주요 업무

- 보건 : 감염병, 농산물, 식중독, 식품 및 첨가물, 지하수 등
- 환경 : 대기, 소음, 토양, 악취, 환경사고, 먹는물, 오폐수 등
- 동물위생 : 구제역 및 AI등 가축 질병, 축산물 및 원유 검사, 역학조사 등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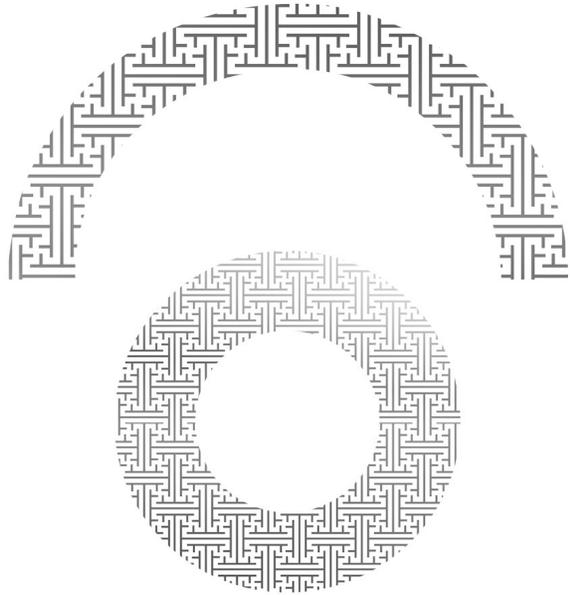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 설립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조례의 제정

제3절 설립 및 운영재원의 확보방안

제4절 인력확보방안



제5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 설립방안

제1절 기본방향

-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기능, 환경기능, 가축위생기능 등 통합
 - 기존의 가축위생연구소(가축위생분야)를 신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
- 총 사업비는「보건환경연구원법」에서 지원 규정된 비율 및 내시된 사업비에 시비를 충당하여 설립 추진
 - 동법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업비를 보전 받아 시비와 대체 정산
- 조직 및 인력은 최소한으로 출범하고 시세 증가에 따라 충원
- 설립 위치는 서북부지구 등 용역을 근거로 하여 폭넓게 검토, 대상지 결정

제2절 조례의 제정

- 조례명 : (가칭)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안)
- 조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환경·가축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검사 의뢰) 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검사,

분석, 감정 및 소분봉합(이하 “시험·검사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검사 의뢰서와 시험·검사용 검체 소요량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조의2(안전성 검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할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수·축산물과 그 외의 유통 생산물에 대한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생산물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식품위생법」 제72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즉시 폐기처분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병성감정 수수료 및 혈청검사 수수료에 따르며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때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는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별표 1에 따라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은 시험·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시험·검사 등을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이 시험·검사 성적을 확정 후에는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 ④ 원장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가 원할 경우에는 직접교부 할 수 있다.
 - ⑤ 원장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후 의뢰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1. 시험·검사 성적서(1건당) : 500원
 - 2. 외국어 번역문(영문 1건당) : 1000원
- － 제5조(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 2.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및 단속을 위한 경우
 -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 6. 지역하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검사
 - 7. 공공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
 - 8. 축산물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한 경우
 -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각급학교 또는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제6조(시험·검사 등 불응) 시험·검사 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검사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검사를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검사 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 등 금지)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검사 의뢰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절 설립 및 운영재원의 확보방안

- 「보건환경연구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
- 연구용역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기본 모델 등 작성,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비 지원 건의
 - ※ 금산군의 「다락원」 설립 사례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예산
 - 건축비 추계총액 : 9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토 지 매입비	설계비
	합 계	국 비 (40%)	시 비 (60%)			
합 계	97	39	58	58	34	5
보건분야	55	22	33	31	19	5
환경분야	28	11	17	13	15	-
BL3	14	6	8	14	-	-

- 기 확보된 예산 : 설계비(질병관리본부에서 2.1억원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토 지 매입비	설계비
	합 계	국 비 (40%)	시 비 (60%)			
합 계	97	39	58	58	34	5
보건분야	55	22	33	31	19	5
환경분야	28	11	17	13	15	-
BL3	14	6	8	14	-	-

○ (건설비) 연구원 설립비용 97억 원 중 시비 58억 원 투입 필요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토 지 매입비	설계비
	합 계	국 비 (40%)	시 비 (60%)			
합 계	97	39	58	58	34	5
보건분야	55	22	33	31	19	5
환경분야	28	11	17	13	15	-
BL3	14	6	8	14	-	-

○ (장비구입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40억 원 투입 필요

○ (운영비) 연간 운영비 약 30억 원 소요 예상

-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에 대한 국비 지원 선례가 없어 관련 부처(복지부·기재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 예상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및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제9조(국고보조)

대 책	①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건의 등 다각적 노력 경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시행령 제4조, 세종시특별법 제3조 근거) ② 연도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
--------	---

제4절 인력확보방안

- 2019년 개원을 목적으로 인력 확보 추진
 - 2018년 하반기 행자부의 차년도 기준인건비 책정 수요조사 전략 대응
 - 세종시의 특수성·중요성 등 지역현안 수요 적극 반영
- 2018년 4/4분기 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등 자치법규 개정 (증가인력 반영) 등 추진 계획

구 분		보건소의 기능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보건분야	감염병 예방 및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결핵검사, 식중독 검사(노로, 로타바이러스 등) 인체 검체 채취 및 의뢰 (연간 50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조기진단과 위해인체 미생물 등 검사 - 메르스, 결핵, 식중독 등 균 검사 ■ 국제 규격화된 위해 미생물 검사로 안전성 확보
	식의약품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발생 시 보존식 및 환경검체, 음용수 수거 검사, 유통 식품 농산물 농약성분검사 등 환경검체 채취 및 의뢰 (연간 30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식품기구, 용기,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환경검체 미생물 검사 ■ 부정·불량식품 안전성 검사 ■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 식자재 방사능 검사
환경분야	환경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수질, 악취,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등 관외 민간대행업체 의뢰 (연간 50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도 상시측정(오존 및 미세먼지) ■ 미세먼지 중 중금속 함유량 조사 ■ 하천 및 수질측정망,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오염 물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검사, 식품규격기준 검사 등 관외 민간대행업체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 지하수 등 먹는 물 검사 ■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 검사 ■ 관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구 분		보건소의 기능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연구·조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사업 수행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드기 분포, 다중 이용 화장실 위생 오염도 조사 ■ 커피 등 기호음료에 대한 항산 화물질 측정 ■ 주요 자전거도로 대기질 및 노인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조사 ■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시설의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

⇒ 보건소는 질병예방, 진료, 건강증진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중이며, 감염병 관련 단순 검사, 검체 채취 및 의뢰 기능 정도에 한정되어,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기능 수행 및 선제적 대응에 한계

○ (조직규모)

- 초기 : 25명, 2과 5담당

계	원장 (4급)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		비고
		총무	감염병	식품분석	대기보건	수질분석	
25명	1	13			11		

- 중장기 : 37명, 2과 8담당

계	원장 (4급)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			비고
		총무	감염 병	약품 화학	식품 분석	동물 위생	대기 보건	수질 분석	생활 환경	
37명	1	21					16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 근거, 최소 필요인력 요청 ② 최소인력 배치 후 연도별 단계적 증원방안 추진
--------	---

〈부록〉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지선정 등을 위한 의견조사

본 설문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설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건설하는데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해야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여 주신다면 바람직한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하 혜 수

조사표 관련 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

(02-3488-7317/kpd@krila.re.kr)

※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번호에 √ 표시하시고, 연령과 근무기간은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만 _____세
직업	① 공무원 ② 상업 ③ 농림업 ④ 자영업 ⑤ 회사원 ⑥ 무직 ⑦ 기타()
학력	① 대학원 이상 ② 대졸 ③ 고졸 ④ 중졸 이하
거주지	_____동(읍/면)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